

<투자설명서 변경사항>

1.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p>10.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2011년 9월 15일부터 2014년 11월 16일까지 중국 A Share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준비금으로 유보 및 적립하였습니다.</p>	<p>10.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중국 A Share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바, 향후 중국 정부의 과세 방침 등에 따라 과세준비금의 유보 및 적립을 추가로 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잔존 수익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모투자신탁은 2011년 9월 15일부터 2014년 11월 16일까지 중국 A Share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준비금으로 유보 및 적립하였으나 중국 재무성 고시에 따라 2014년 11월 17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과세준비금 유보 및 적립을 중단하였으며 향후 중국 정부의 과세방침에 따라 과세준비금의 유보 및 적립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에서 유보 및 적립한 과세준비금이 부족하거나 남을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세제위험 참조)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로서 선관주의 및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부합하는 조치(추가적인 과세준비금 적립 또는 기 적립된 과세준비금의 모투자신탁 재산으로의 환입 등)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간 형평성과 잔존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동의 또는 고지를 거치지 않고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익자는 이러한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p>세제위험</p>	<p>해외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증권이 특정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국가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투자신탁이 수령하는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재무성(Ministry of Finance)이 2014년 11월 14일에 「과세 2014-79호 고시」를 통해 중국 본토 주식의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에 대한 일시적 면세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모투자신탁은 동 중국 재무성 고시를 바탕으로 2014년 11월 17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준비금 유보 및 적립을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고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향후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세 방침 관련 추가 고시가 발표되면 그 결과에 따라 과세준비금의 유보 및 적립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p> <p>다만 2014년 11월 16일까지의 중국 A Share 주식 투자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한 중국과세당국의 과세정책, 세율, 적용시기, 소급과세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여부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만일 중국 과세당국이 QFII가 운용(위탁운용 포함) 하는 펀드에서 발생한 중국 A Share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향후 결정할 경우 이 투자신탁의 잔존수익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p>	<p>해외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증권이 특정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국가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투자신탁이 수령하는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은 중국본토(상해 및 심천증권거래소)의 A Share 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중국의 세법 또는 중국 과세당국의 정책에 따라 이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A share 주식 투자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한 중국과세당국의 과세정책, 세율, 적용시기, 소급과세,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여부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만일 중국 과세당국이 QFII가 운용(위탁운용 포함) 하는 펀드에서 발생한 중국 A Share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향후 결정할 경우 이 투자신탁의 잔존 수익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과세정책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이러한 소급과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은 2011년 9월 15일부터 2014년 11월 16일까지 중국 A Share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p>

있습니다. (중국의 과세정책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급과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2011년 9월 15일부터 2014년 11월 16일까지 중국 A Share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준비금으로 유보 및 적립하였습니다.** 과세준비금은 매매차익의 경우 매매차익금액의 10%,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의 경우 평가차익에서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 및 적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과세준비금은 향후 중국과세당국이 QFII에 대한 중국 A Share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소급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중국 세무당국에 대한 세금납부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중국과세당국이 QFII에 적용하는 최종 결정세율,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 기준시점에 따라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며,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만약 중국 과세당국이 2014년 11월 16일까지의 중국 A Share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적용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은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재산에 환입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과세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투자신탁재산에의 환입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만,

평가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준비금으로 유보 및 적립하였습니다. 과세준비금은 매매차익의 경우 매매차익금액의 10%,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의 경우 평가차익에서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 및 적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과세준비금은 향후 중국과세당국이 QFII에 대한 중국 A Share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소급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중국 세무당국에 대한 세금납부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후 중국 재무성(Ministry of Finance)이 2014년 11월 14일에 「과세 2014-79호 고시」를 통해 중국 본토 주식의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에 대한 일시적 면세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모투자신탁은 동 중국 재무성 고시를 바탕으로 2014년 11월 17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준비금 유보 및 적립을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고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향후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세 방침 관련 추가 고시가 발표되면 그 결과에 따라 과세준비금의 유보 및 적립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과세당국이 QFII에 적용하는 최종 결정세율, 2014년 11월 16일까지의 중국 A Share 주식 투자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 기준시점에 따라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며,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I) 만약 중국 과세당국이 2014년 11월 16일까지의 중국 A Share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적용 하지

	<p>기존에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이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재산에 환입되기 이전에 환매를 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과세준비금 환입에 따른 차액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며, 환매를 한 투자자들의 이 투자신탁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만약 중국 과세당국이 2014년 11월 16일까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결정 할 경우, 기존에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을 세금납부(과거, 현재 및 미래 발생 분 포함)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과세 준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분(즉, 실제 부과된 또는 부과될 세금 금액과 과세준비금의 차이)만큼의 금액을 해당 시점의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재산에서 추가적으로 차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투자신탁의 잔존수익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잔존수익자가 부담할 위험이 있는 추가적인 과세대금은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서 유보 및 적립한 과세준비금에 상관없이 중국 과세당국에서 QFII에 적용하는 최종 결정세율,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 기준시점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 최종적인 과세금액은 기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 보다 클 수 있습니다.</p>	<p>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은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재산에 환입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과세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투자신탁재산에의 환입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이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재산에 환입되기 이전에 환매를 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과세준비금 환입에 따른 차액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며, 환매를 한 투자자들의 이 투자신탁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II) 이와 반대로, 만약 중국 과세당국이 2014년 11월 16일까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과세하는 경우, 기존에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을 세금납부(과거, 현재 및 미래 발생 분 포함)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과세 준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분(즉, 실제 부과된 또는 부과될 세금 금액과 과세준비금의 차이)만큼의 금액을 해당 시점의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재산에서 추가적으로 차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투자신탁의 잔존수익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잔존수익자가 부담할 위험이 있는 추가적인 과세대금은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서 유보 및 적립한 과세준비금에 상관없이 중국 과세당국에서 QFII에 적용하는 최종 결정세율, 2014년 11월 16일까지의 중국 A Share 주식 투자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p>
--	---	---

	<p><신설></p>	<p>기준시점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 최종적인 과세금액은 기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 보다 클 수 있습니다.</p> <p>한국에서 설정된 중국 A Share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관한 중국과세당국의 공식·비공식적인 입장 표명, 법원의 판결, 전문가그룹의 분석자료, 시장에서의 일반적이고 통일된 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4년 11월 16일 이전에 발생한 중국 A Share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소급과세 방식 또는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모투자신탁에서 유보 및 적립한 과세준비금이 부족하거나 남을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로서 선관주의 및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부합하는 조치(추가적인 과세준비금 적립 또는 기적립된 과세준비금의 모투자신탁 재산으로의 환입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자간 형평성과 잔존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동의 또는 고지를 거치지 않고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익자는 이러한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	-------------------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제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차이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차이나

<p>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인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홍콩 리미티드 (Eastspring Investments (Hong Kong) Limited)는 중국금융당국으로부터 중국 A Share 주식을 포함한 중국 본토에서 발행된 위안화 표시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인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이하 "QFII") 승인을 받았으며, 해당 모투자신탁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서 중국 A Share 주식을 포함한 중국본토에서 발행된 위안화 표시 유가증권의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중국세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p> <p>현재까지 발표된 외국기업 및 QFII의 중국 내 발생소득에 대한 주요한 과세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p> <p>중국 재무성인 Ministry of Finance (이하 "MOF")와 세무행정관청인 State Administration for Taxation (이하 "SAT")가 공동으로 발표한 CaiShui[2005] 155에 의하면, QFII가 중국 내에 설립한 사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중국 내 브로커를 통하여 실행한 유가증권매매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Business Tax (사업세, 간접세의 일종)가 면제됩니다. 2008년 1월 1일자로 제정된 Enterprise Income Tax Law (이하 "EITL") 및 관련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의 소득(이익, 배당, 이자, 임대료, 로열티 등)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1월 SAT는 Guoshuihan[2009] No.47을 발표를 통해 중국 A Share 주식을</p>	<p>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인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홍콩 리미티드 (Eastspring Investments (Hong Kong) Limited)는 중국금융당국으로부터 중국 A Share 주식을 포함한 중국 본토에서 발행된 위안화 표시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인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이하 "QFII") 승인을 받았으며, 해당 모투자신탁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서 중국 A Share 주식을 포함한 중국본토에서 발행된 위안화 표시 유가증권의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중국세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p> <p>현재까지 발표된 외국기업 및 QFII의 중국 내 발생소득에 대한 주요한 과세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p> <p>중국 재무성인 Ministry of Finance (이하 "MOF")와 세무행정관청인 State Administration for Taxation (이하 "SAT")가 공동으로 발표한 CaiShui[2005] 155에 의하면, QFII가 중국 내에 설립한 사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중국 내 브로커를 통하여 실행한 유가증권매매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Business Tax (사업세, 간접세의 일종)가 면제됩니다. 2008년 1월 1일자로 제정된 Enterprise Income Tax Law (이하 "EITL") 및 관련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의 소득(이익, 배당, 이자, 임대료, 로열티 등)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1월 SAT는 Guoshuihan[2009] No.47을 발표를 통해 중국 A Share 주식을</p>
---	---

발행한 중국상장회사가 QFII에게 지급하는 배당 및 이자에 대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소급과세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1월에 제정된 EITL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6일 중국 외환관리국인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이하 "SAFE")와 세무행정관청인 SAT는 공동으로 Huifa[2009] No.52를 발표하여 QFII가 미화 5천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에는 중국 A Share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매매차익 및 배당소득 등 포함)에 대한 세금결제확인서("Tax Clearance Certificate")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국 재무성(Ministry of Finance)이 2014년 11월 14일에 「과세 2014-79호 고시」를 통해 중국 본토 주식의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에 대한 일시적 면세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모두자신탁은 동 중국 재무성 고시를 바탕으로 2014년 11월 17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준비금 유보 및 적립을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고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향후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세 방침 관련 추가 고시가 발표되면 그 결과에 따라 과세준비금의 유보 및 적립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14년 11월 16일까지의 중국 A Share 주식 투자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한 중국과세당국의 과세정책, 세율, 적용시기, 소급과세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여부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만일 중국 과세당국이 QFII가 운용(위탁운용 포함)

발행한 중국상장회사가 QFII에게 지급하는 배당 및 이자에 대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소급과세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1월에 제정된 EITL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6일 중국 외환관리국인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이하 "SAFE")와 세무행정관청인 SAT는 공동으로 Huifa[2009] No.52를 발표하여 QFII가 미화 5천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에는 중국 A Share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매매차익 및 배당소득 등 포함)에 대한 세금결제확인서("Tax Clearance Certificate")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한국과 중국간에는 1994년에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약에 의하면 일방 계약국의 거주자(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세당국에서 QFII가 운용(위탁운용 포함) 하는 펀드를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중국 A Share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국 법인세법 제57조의 2는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신탁이 국외 투자자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특정 한도 내에서 환급하여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설정되고 QFII가 운용(위탁운용 포함) 하는 펀드에 대하여 중국과세당국이 중국 A Share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할 경우 이 역시 동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될

하는 펀드에서 발생한 중국 A Share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향후 결정할 경우 이 투자신탁의 잔존수익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급과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2011년 9월 15일부터 2014년 11월 16일까지 중국 A Share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준비금으로 유보 및 적립하였습니다.** 과세준비금은 매매차익의 경우 매매차익금액의 10%,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의 경우 평가차익에서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 및 적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과세준비금은 향후 중국과세당국이 QFII에 대한 중국 A Share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소급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중국 세무당국에 대한 세금납부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중국과세당국이 QFII에 적용하는 최종 결정세율,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 기준시점에 따라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며,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만약 중국 과세당국이 2014년 11월 16일까지의 중국 A Share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적용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은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재산에 환입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도 있으나 동 규정에 따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은 중국본토(상해 및 심천증권거래소)의 A Share 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중국의 세법 또는 중국 과세당국의 정책에 따라 이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A share 주식 투자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한 중국과세당국의 과세정책, 세율, 적용시기, 소급과세,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여부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만일 중국 과세당국이 QFII가 운용(위탁운용 포함) 하는 펀드에서 발생한 중국 A Share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향후 결정할 경우 이 투자신탁의 잔존 수익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급과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은 2011년 9월 15일부터 2014년 11월 16일까지 중국 A Share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준비금으로 유보 및 적립하였습니다.** 과세준비금은 매매차익의 경우 매매차익금액의 10%,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의 경우 평가차익에서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 및 적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과세준비금은 향후 중국과세당국이 QFII에 대한 중국 A Share 주식의 매매차익에

과세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투자신탁재산에의 환입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이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재산에 환입되기 이전에 환매를 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과세준비금 환입에 따른 차액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며, 환매를 한 투자자들의 이 투자신탁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만약 중국 과세당국이 2014년 11월 16일까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결정 할 경우, 기존에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을 세금납부(과거, 현재 및 미래 발생 분 포함)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과세 준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분(즉, 실제 부과된 또는 부과될 세금 금액과 과세준비금의 차이)만큼의 금액을 해당 시점의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재산에서 추가적으로 차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투자신탁의 잔존수익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잔존수익자가 부담할 위험이 있는 추가적인 과세대금은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서 유보 및 적립한 과세준비금에 상관없이 중국 과세당국에서 QFII에 적용하는 최종 결정세율,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 기준시점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 최종적인 과세금액은 기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 보다 클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중국간에는 1994년에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약에 의하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a

대해 소급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중국 세무당국에 대한 세금납부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후 중국 재무성(Ministry of Finance)이 2014년 11월 14일에 「과세 2014-79호 고시」를 통해 중국 본토 주식의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에 대한 일시적 면세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모투자신탁은 동 중국 재무성 고시를 바탕으로 2014년 11월 17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준비금 유보 및 적립을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고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향후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세 방침 관련 추가 고시가 발표되면 그 결과에 따라 과세준비금의 유보 및 적립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과세당국이 QFII에 적용하는 최종 결정세율, 2014년 11월 16일까지의 중국 A Share 주식 투자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 기준시점에 따라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며,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I) 만약 중국 과세당국이 2014년 11월 16일까지의 중국 A Share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적용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은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재산에 환입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과세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투자신탁재산에의 환입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만,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거주지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세당국에서 QFII가 운용(위탁운용 포함) 하는 펀드를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중국 A Share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국 법인세법 제57조의 2는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신탁이 국외 투자자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특정 한도 내에서 환급하여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설정되고 QFII가 운용(위탁운용 포함) 하는 펀드에 대하여 중국과세당국이 중국 A Share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할 경우 이 역시 동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포함이 될 수도 있으나 동 규정에 따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신설>

기준에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이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재산에 환입되기 이전에 환매를 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과세준비금 환입에 따른 차액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며, 환매를 한 투자자들의 이 투자신탁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Ⅱ) 이와 반대로, 만약 중국 과세당국이 2014년 11월 16일까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과세하는 경우, 기준에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을 세금납부(과거, 현재 및 미래 발생 분 포함)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과세 준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분(즉, 실제 부과된 또는 부과될 세금 금액과 과세준비금의 차이)만큼의 금액을 해당 시점의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재산에서 추가적으로 차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투자신탁의 잔존수익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잔존수익자가 부담할 위험이 있는 추가적인 과세대금은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서 유보 및 적립한 과세준비금에 상관없이 중국 과세당국에서 QFII에 적용하는 최종 결정세율, 2014년 11월 16일까지의 중국 A Share 주식 투자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 기준시점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 최종적인 과세금액은 기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 보다 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설정된 중국 A Share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관한 중국과세당국의 공식·비공식적인 입장 표명, 법원의 판결, 전문가그룹의 분석자료, 시장에서의 일반적이고 통일된 예측

		<p>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4년 11월 16일 이전에 발생한 중국 A Share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소급과세 방식 또는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모투자신탁에서 유보 및 적립한 과세준비금이 부족하거나 남을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로서 선관주의 및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부합하는 조치(추가적인 과세준비금 적립 또는 기적립된 과세준비금의 모투자신탁 재산으로의 환입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자간 형평성과 잔존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동의 또는 고지를 거치지 않고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익자는 이러한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	--	---